



한국관광협회중앙회

수신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

제목 2026년 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접수 안내

1.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(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및 제109조의2(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) 관련입니다.
3. 위 호와 관련하여 '26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'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, 귀 협회의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* 세부사항 [붙임] 참조

- (1) 지정기간: 2026년 4분기('26.10.1. ~ '26.12.31.)
- (2) 신청기간: '26.9.7.(월) ~ 9.22.(화), 14:00까지
- (3) 접 수 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호텔업협회,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
- (4) 참고사항
 - 가격인상 요건: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%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(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24, 2025년 4분기 중 택1)
 - '26년 3분기 지정시설도 '26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, 재신청 필요

나. 관련 문의: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

- TEL: 02-2079-2461 / Email: kta7485@naver.com

붙임 26.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

한국관광협회중앙회



제출자

2026. 09. 08.

박성현

시행 관광산업국-505

(2026. 09. 08.)

접수

우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(관훈동) 한국관광협회중앙회 /

전화번호 02-757-7485

팩스번호 02-757-7489

/ ekta7485@gmail.com

/ 비공개(6)